

## 국민취업지원제도

#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기업 안내



**국민취업지원제도란**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 
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'한국형 실업부조' 제도입니다

### 01

#### 참여 기업 신청대상

##### 신청대상

-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
 

\*단 벤처기업,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컨텐츠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
- 대·중견·중소기업, 공공기관, NGO, 사회적기업등

##### 참여제한 사유



- 소비·향락업 등(부동산, 유통, 노래연습장, 비디오, 복권, 기타 캠블링·베팅업 등)
- 인력공급업·파견업 등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기업
- 임금체불·고용보험료 체납 및 중대재해발생기업
- 부정행위 등으로 지원금 지급 제한 중인 사업주 및 중대한 사회문제 야기한 기업 등
-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인위적인 근로자 감원 이력있는 사업주(인턴형)

### 02

#### 참여 절차



프로그램  
참여 신청  
(운영기관)



적격심사  
결과통보  
(운영기관)



지원  
약정 체결  
(운영기관)



참여자 연계·  
표준협약 체결  
(참여자)



수당·임금 지급  
(참여자)



지원금 신청  
(운영기관)

### 03

#### 신청방법

온라인 신청 또는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

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▶ [www.work.go.kr/kua](http://www.work.go.kr/kua)



## 일경험 프로그램은

수급자의 직장 적응능력·직무향상을 지원하여  
일경험 프로그램 종료 후 채용가능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


04

## 일경험 프로그램 유형 및 지원 수준

...

### 체험형(직무 체험)

### 인턴형(직무 수행)

#### 참여자 지위

- 일경험 수련생, 견습생

- 근로기준법상 근로자(4대보험 가입)

#### 지원기간(시간)

- 최대 30일(사업장 휴무일 제외)
- 1일 4시간(1주 20시간) 이내 원칙

- 최대 3개월

- 1주 30~40시간 내 협의하되, 1일 8시간

#### 직무내용

- 기존 근로자 수행업무 보조
- 기초적 사무 보조, 사회서비스 보조 등
- 위험·유해한 업무는 배제

- 직무역량 향상에 도움될 수 있는 직무
- 취업에 직접 연계 가능하도록 직무 수행
- 단순·반복적인 직무 등은 제외

#### 지원 내용

- 1인당 식비·교통비 등 실비(1일 2.1만원)
- 1인당 멘토링 수당(1인당 10만원)

- 1인 인건비 최대 월 1,822,480원
- 1인 멘토링 수당 월 10만원

※ 참여자 임금은 기업에서 별도 지급



#### 모집 규모

- 고용보험 피보험자(직전 월말기준) 수 기준  
40% 이내 모집 가능

- 고용보험 피보험자(직전 월말기준) 수 기준  
40% 이내 모집 가능

※ 20~40% 모집시 체험형 10~20% 연계필수

...

05

##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기관

...

사업지역	선정기관	연락처	사업지역	선정기관	연락처
서울 전지역	(주)한국직업개발원, (사)국제경영원	070-4373-5013	광주·전남	(사)광주경영자총협회	062-654-3426
인천·경기북부 강원 철원군	(주)지에스씨넷 파주지점	032-426-1949	전북	(주)베스트인	063-714-3695
경기 남부	케이잡스(주) 부천지사	032-351-8852	대전·세종 충북·충남	(사)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	070-4066-4433
부산·경남	퍼스트인잡(주)	051-714-2480	제주	제주경제통상진흥원	064-805-3399
울산·창원	케이잡스(주) 창원지사	052-294-9865	강원권 (철원제외)	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(춘천)	033-256-8816
대구·경북	(주)지에스씨넷 구미지점	1811-7629			



고용노동부

취업

이

팀 국민취업지원제도